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른 추진체계 운영방안 연구\*

한승석\*\* · 곽병조\*\*\* · 조소진\*\*\*\*

### Promotion System Operation Plan for the Enactment of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Seung-Seok Han\*\* · Byoung Jo Kwak\*\*\* · So-Jin Cho\*\*\*\*

**요약 :** 정부는 2023년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은 농촌공간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협약제도에서도 추진주체가 존재하기에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한 추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법령과 제도 내 중복되는 추진주체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추진 주체로 통합하고, 주민의 신규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초지자체의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추진체계 안을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협약, 농촌지역개발, 추진주체, 추진체계

**Abstract :** In 2023,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Support of Rural Spaces” to manage rural spaces efficiently. This law outlin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rural space management and designates various implementing bodies. However, since implementing bodies already exist under the existing Rural Agreement System, confusion has arisen among field practitioner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mplementation systems of the existing Rural Agreement System and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As a result, it proposes the integration of overlapping implementing bodies into those designated by the law and suggests new participation methods for residents. Additionally, the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effective plans for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implementation system proposed through this research will help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be smoothly established in practice.

Key Words :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ct, Rural convention, Rural area development, Promoting entity, Promoting system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발주한 과제 ‘농촌협약제도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의 일부분의 내용을 활용하였음.

\*\*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t. of Regional and Urban Planning Research, ChungBuk Research Institute, ssh@cri.re.kr)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bjoko@krihs.re.kr)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jin8028@naver.com)

## I. 서론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소멸을 넘어 국가적 소멸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상호(2016)는 지방소멸을 이야기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39세 여성 인구수를 고령인구수(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지방소멸 위험 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대도시 세력이 약한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군단위의 농어촌지역이다.

이상호(2016)의 연구를 기점으로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관련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sup>1)</sup>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 시대’로 공식 진입하였다(성장훈, 2022). 이러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국토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을 때, 농촌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2020년 충남 행정리 인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에 적용하였을 경우 거의 모든 마을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도출되었다(90.4%) (윤정미, 2024). 이러한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양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인구 비율의 급감 및 고령인구 비율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라는 질적 문제도 함께 야기하고 있다(유학열·조소진, 2023).

지방소멸, 특히 농촌소멸의 위기감 속에서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365생활권<sup>2)</sup> 구축을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의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조영재 등, 2023). 2023년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라 할 수 있는 법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농식품부, 2023). 법제정을 위한 선행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농촌협약은 장기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단기계획인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의 내역 사업을 대상으로 시·군에 패키지 지원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김상범 등, 2022).

2021년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맺는 것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75개의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었다. 농촌협약을 위해서는 전술한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시 해당 시·군의 장기적인(20년) 농촌공간 미래상이 생활권별로 수록되어야 한다.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수록되는 계획으로 5년간 시행될 사업이 제시되며, 두 계획은 농촌협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추진체계는 관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민·관·학·연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민·관 혹은 민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협약사업을 전담으로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제시한 이유는 지역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와 같은 추진체계가 작동하기엔 복잡한 추진체계의 문제,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전문가,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기적이면서 장기적인 추진체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체계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도 추진체계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는 농촌협약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 역시 동 법령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령상의 추진체계와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상의 추진체계 안에서 농촌협약제도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 정리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지역개발 추진체계의 종류와 운영방안을 분석하고 현재 법령상 제시된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한 후 2021년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체계 개선책에 대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협약 진행 시 효율적인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농촌지역개발의 주체 및 거버넌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추진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추진주체는 참여주체로도 볼 수 있는데 참여주체는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이다(김정섭 등, 2009). 개인은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직은 주민조직과 공무원조직으로 구분된다. 주민조직은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마을 및 거점의 추진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이장단 등의 리더 조직과 주민참여조직이 해당된다. 공무원조직은 담당 실무를 시행하는 관련 과(課)를 비롯해 행정이 함께 참여한 행정협의회가 해당된다. 이들 조직과 더불어 최근에는 주민주도형 사업, 민관협력이 중요시되면서 주민과 행정을 중간적 위치에서 연결시켜주는 중간지원조직이 강조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주체 중 공동체와 중간지원 조직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공동체 및 농촌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농촌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높기 때문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공동체 의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박덕병 등, 2018). 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도출하고 있다(Chavis and Wandersman, 1990; Zhao *et al.*, 2012; 서재호, 2013; 임광명, 2017; 최정신 등, 2022).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고진영 등(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 사업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사업의 지속적 참여 및 참여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은 미치는 것은 개인 역량 중 지역 및 생활만족도라고 하였다. 조소진·정환영(2017)은 역량강화의 주민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역량강화가 주민의 개인적·관계적 인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빈도가 높은 주민일수록 인식변화가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조성된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민·관 조직의 중간적 위치에서 각종 정보의 네트워크와 협력, 조정

등의 활동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있다(김두순 등, 2020). 중간지원조직은 2개 이상의 주체, 일반적으로 민과 관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계하는 ‘중간조직’이라는 위상적 특징과 각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원하여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지원조직’의 기능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김기태, 2019). 구자인(2021)은 전체 시군에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센터가 조성된 충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마을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우리나라의 민관협치가 성숙되도록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농촌지역개발에서 추진체계는 참여한 주체들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수행, 모니터링·환류 등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거버넌스라 칭하기도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협치 또는 공치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대부분 문헌에서 그렇듯이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최창석 등, 2021). Goodwin and Paninter(1996)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를 중앙 정부, 선출되지 않은 다양한 국가조직(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 민간 사업체 및 기업, 대중 매체, 그리고 초국가적 기관(유럽의 경우 EU)과 같은 공식 정치 영역 외부의 기관 및 개인 행위자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해 EU의 정책설명서에서는 파트너십, 지역 참여, 민주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Ward and McNicholas, 1998).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대별로 변하여 왔다. 1970년대 정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개념이 외연적 확장을 이루었으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와 논의대상이 세분화되었다(평택시, 2019). 결국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중앙 중심에서 지방 거버넌스 중심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표 1).

거버넌스의 결정요인과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Lasker *et al.* (2001)은 자원, 파트너의 특징, 파트너들간의 관계, 파트너십의 특성,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였다(표 2). 마상진·권인혜(2014)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자체장의 리더십, 공무원의 공감 및 의지, 지자체의 물적·인적 지원, 지역 농업인의 추진 의지, 지역주요 농업인단체의 역량(전문성), 농업인(단체) 간의 협력, 그리고 의회, 농협, 중앙정부 등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표 1. 거버넌스 개념 변화 과정

구분	거버넌스 개념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같은 의미로 거버넌스를 이해</li> <li>• 국가 수준에서의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li> <li>• 경제적 사회적 발전 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li> <li>•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li> <li>•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협의 형성 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 강조</li> <li>• NGO와 CBO의 역할에 대한 인식</li> <li>•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에 개발 필요성 강조</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에 주목</li> <li>•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강조</li> </ul>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거버넌스에서 지방 거버넌스(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로 개념 확장</li> <li>•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참여 방식</li> </ul>

출처 : 김병환 등, 2004; 마상진·권인혜, 2014; 평택시, 2019.

표 2. 거버넌스의 결정요인

구분	세부요소
자원	자금, 공간/장비/재화, 기술과 전문지식, 정보, 사람/조직/집단에 대한 연계, 승인(endorsements), 소집능력(convening power)
파트너의 특징	이질성(heterogeneity), 관여수준(level of involvement)
파트너들간의 관계	신뢰, 존경, 갈등, 권한차별
파트너십의 특징	리더십, 행정 및 관리, 운영체제, 효율성
외부환경	지역사회 특성, 공공 및 조직 정책

출처 : Lasker *et al.*, 2001; 최영출, 2002.

이를 종합해보면,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나, 크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 및 운영과 관련된 자원, 상호간에 형성되는 신뢰, 존경 등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에서는 과거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사득환·최일문, 2023).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된 자치분권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마을만들기는 전국적으로 민관협력을 기반하는 공공의 제로 더욱 확산되었다(고경호, 2021). 정선화(2024)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스웨덴 사례를 고찰하였다. 스웨덴 농촌개발프로그램 사례는 정책프로그램 전략 수립에 공공·전문가 주도로 다차원적 공공·민간·사회 주체들이 직접 참

여하여 문제 진단 및 해결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가 형성되는 것으로 '공동생산'의 결과를 낳는다(Rhodes, 1996).

최영완 등(2022)은 김해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단계, 성과목표 설정,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추진주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추진단계의 진입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주민과의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읍·면 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며 농촌지역개발 추진주체와 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농촌지역개발의 추진주체 및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주민, 지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인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며 공동체 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과 민간 역할의 한계를 넘어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도와주면서 주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의 의사결정 및 시행을 담당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 논의는 크게 농촌 환경개선,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역량 강화라는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이영아, 2021).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1950~60년대의 지역사회개발사업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다양한 명칭과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의 사업구조를 띄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들어서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강조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을 채택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김강섭·이상정, 2004). 이러한 상향식 지역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05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 특화 발전 도모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 2021).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이 2020년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은 광역시·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성재 등, 2022). 농촌 내 중심지 및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 등의 사업은 농식품부에 사업을 존치하고 이외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다. 즉, 현재 농촌을 마을과 거점으로 이원화할 때 마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거점 이상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송미령·박주영(2004)은 현재까지 시행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으로 분류하였고, 계획수준을 기준으로 기본계획과 사업(실시/물량)계획으로 분류하였다. 사업 대상지역의 공간 범위 기준으로는 읍·면사업과 시·군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업목적과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정주기반확

충, 도농교류,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 성격 등으로도 분류하였다. 위의 계획들은 각각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나 종합적 공간계획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성주인 등, 2024). 이에 정부는 2023년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삶터, 일터, 쉼터의 농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여 농촌공간계획체도를 법제화하였다.

농촌공간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농촌의 역할과 비전, 농촌 지역개발의 방향성 실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등을 담은 총괄법의 제정은 과거부터 농촌지역개발에 필요한 과제였다(송미령·박주영, 2004). 법령 내에서도 이를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의 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농촌공간지원기관 등의 추진주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관련 추진주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에, 기존 농촌협약에서 제시하였던 추진주체가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농촌지역개발의 최대 화두가 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현장 수용력 증진을 위하여 추진주체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III.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주체

### 1. 농촌공간계획의 구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전술하였듯이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4가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농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기본방침이다. 기본방침은 농촌 전체의 미래상과 장기적(10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써 국토종합계획에 대응·보완하는 계획, 농촌자원 및 환경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의 미래 가치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성중탁, 2023). 다음은 기초지자체인 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있다.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따라

표 3. 각 단계별 농촌 공간계획의 내용 및 절차

구분	계획	내용 및 절차
중앙	기본방침(10년)	농촌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하는 전략계획(10년)
시·군	기본계획(10년)	농촌공간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
	시행계획(5년)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 세부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 및 관리계획 등
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시행기간 등

출처 : 성중탁, 2023의 자료를 재구성함.

시·군에서 10년 동안 지자체의 농촌 미래상 및 비전, 계획 목표, 농촌 공간 구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방향 등을 구상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농촌협약제도에서 구분하였던 농촌생활권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생활권은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분이지만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해당 시군의 농촌공간의 재생을 위한 지역구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시·군별 농촌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 방향 등을 담은 계획으로, 농촌의 토지이용체계를 반영·보완하고, 농촌 공간정비와 기능재생 등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성중탁, 2023). 시행계획은 5년 단위 단기 계획으로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수단을 포함한 계획과 농어촌토지이용 관련 사항 및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체결하는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계획이다(성중탁, 2023). 마지막으로 농촌협약이 이루어진 후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있다. 사업계획은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투자계획, 시행기간 등이 포함되는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의 계획 체계는 농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기본방침 하에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하고 체결된 이후 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령 및 시행령의 추진 체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의 추진주체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

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주체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원조직, 주민관련 조직이 이에 해당된다.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수립되는 각종 계획에 대해 심의와 승인을 시행하는 기구로 중앙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는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과 관련 국가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시행령에서는 심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로 농식품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광역농촌공간심의회는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광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기초농촌공간심의회는 지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기초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중요 시책을 심의한다. 광역농촌공간심의회와 기초농촌공간심의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과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표 4에서 제시하였듯이 중앙, 광역, 기초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관련하여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은 농식품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평가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은 시도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에 대해 조사·관리 지원의 업무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 농촌공간광역

**표 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기관의 요건**

<p>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p> <p>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지역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된다)</p> <p>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된다)</p> <p>마. 그 밖에 법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p>
---

출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표 5.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기관의 종류 및 주요업무**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li> <li>•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연구</li> <li>•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li> <li>•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시행·운영·점검·평가 등의 지원</li> <li>• 통합지침 작성·운영 지원</li> <li>• 제44조에 농촌공간종합체계 구축·운영</li> <li>• 전문인력의 양성</li> <li>• 농촌협약에 관한 지원</li> <li>•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li> <li>•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li> <li>• 지역협의체의 구축·운영 등의 지원</li> <li>•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li> <li>•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 조사·관리 지원</li> <li>•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연구</li>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li> <li>• 사업계획 수립 지원</li> <li>•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li> <li>• 주민제안 지원</li> <li>•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점검·평가 지원</li> <li>•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무</li> </ul>

출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원기관과 업무가 비슷하면서도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제안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각 지원기관의 주요업무 내용은 표 5와 같다. 시행령에서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원조직은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와 시·군 및 특별자치시에 해당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직구성의 강제성이 없다. 주요 업무로는 중앙의 경우 기본방침 작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평가, 통합지침 마련·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예산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군 및 특별자치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조정·관리, 주민협정체결과 주민협의회 운영지원사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상의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자문 및 평가를 담당하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민간에

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지원조직은 관(官)이라 할 수 있다. 각 주체들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법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에서 우선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은 기본계획(10년)이다.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10년간 어떻게 진행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략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5년간 어떠한 사업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시킬 것인지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농식품부에 농촌협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두 계획은 모두 수립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농촌공간심의회 심의를 거쳐 광역농촌공간심의회에서 승인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공시 이후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은 두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중앙/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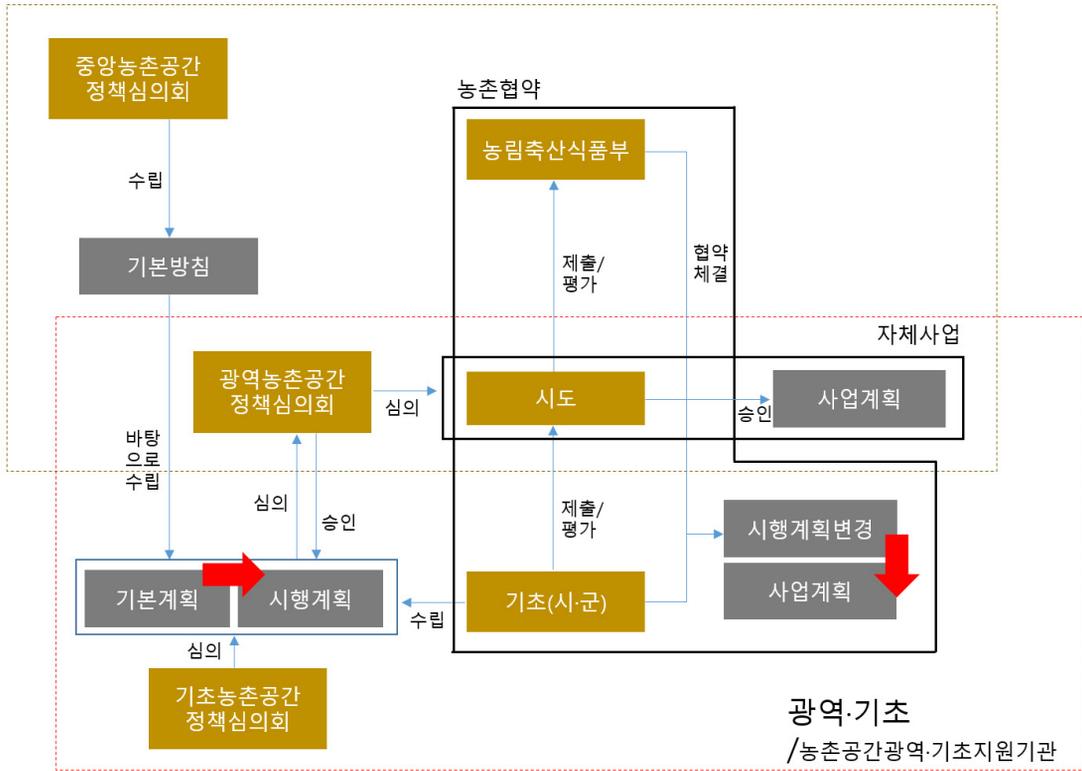


그림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계획수립 체계

러한 계획 체계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공시 된다는 것이 계획수립 측면에서 현재 농촌협약제도와 의 차이로 할 수 있다. 농촌협약제도에서는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이 두 계획을 활용하여 공모에 응모하게 된다. 하지만 변경되는 법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두 계획이 농촌협약제도 공모 전 기초와 광역농촌공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시되어야 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때, 이 과정을 추진하는 추진주체는 농촌협약제도에서 사용되었던 추진주체와 명칭과 역할면에서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명칭만 변경되는 주체도 존재하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내에 주민과 관련된 활동 및 참여 주체는 그림 2와 같이 주민공청회,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회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주민공청회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진행된다. 다음으로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회는 농촌특화지구와 관련

된 주민참여를 의미한다. 주민제안을 통해 주민들은 운영하고자 하는 특화지구를 제안하고, 주민협의회를 통해 특화지구 운영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주민제안은 특화지구 뿐만 아니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기 한다. 시·군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사업과 함께 협정된 특화지구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및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특화지구와 관련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존 지역 개발 관련 법령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공청회가 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참여라면, 특화지구와 관련된 주민참여는 주민이 직접 특화지구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은 특화지구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참여를 통해 계획수립과 이행에 모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참여방법은 농촌지역개발에서 과거부터 강조해왔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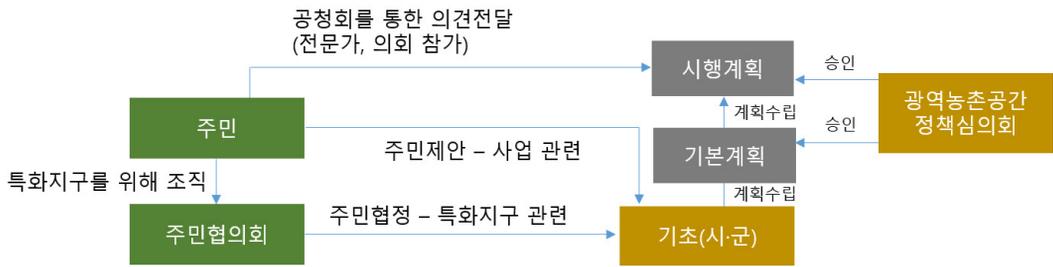


그림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자원 계획수립의 주민참여 체계

하고 실행하는 내발적 발전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

##### 1.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주체 및 운영방법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실행력은 기 추진 중이던 농촌협약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하는 농촌협약제도는 결국 법령 제정 이전 시행하고 있던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기 추진중이던 농촌협약제도의 농촌공간전략계획은 20년 계획이나 시·군의 농촌공간 전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생활권 단위의 전략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실행력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계획과 유사하다. 단, 현재의 농촌협약제도에서 운영되는 추진주체는 사업계획의 실무를 위한 추진주체라 할 수 있고 법령의 추진주체는 그보다 상위개념으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고도화된 추진체계라 할 수 있다. 즉, 향후 시행되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추진체계의 하부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농촌협약을 위해서 구성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추진주체는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지원센터, 생활권 추진위원회, 농촌협약위원회 등이 있다. 관의 추진주체는 전담조직과 행정협의회로 전담조직은 농촌협약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행정조직을 의미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課)' 단위 부서로 5인 이상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농식품부, 2022). 행정협의회는 농촌협약을 위하여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적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계·협업사업 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민간 혹은 민·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의미하며 현장활동가가 포함되어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의 형태는 민간 위탁 혹은 관설민영<sup>3)</sup>의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띠고 있다. 농식품부(2022)에서는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관협력 관점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과 함께 민간이 참여한 조직으로 생활권 추진위원회와 농촌협약위원회가 있다. 생활권 추진위원회는 사업이 투입되는 생활권 내의 주민과 읍·면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공유, 세부내역 사업의 협의와 결정 등을 수행한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이 민간대표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농촌협약과 관련된 주요 결정 사항을 의결한다. 구성은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을 비롯하여 실과의 과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시·군에서 우선생활권을 선정할 때 본 농촌협약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표 6).

해당 추진주체들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농촌협약제도를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체계는 그림 3과 같다. 상향식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사업은 생활권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하며 이를 전담조직에서 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농촌협약위원회는 이를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은 전체적인 운영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즉, 주민이 사업을 건의하면 행정에서 이를 검토하고

표 6. 농촌협약제도 추진주체 및 역할

조직	구성 및 역할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課)’ 단위의 부서로 5명 이상으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과제와 관련된 담당자로 전원 구성</li> <li>· 농촌협약의 사전 기획과 총괄,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li> </ul>
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이 협의회 장을 담당하고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부서와 관련 부서팀장으로 구성</li> </ul>
농촌협약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장(혹은 부단체장), 전담부서의 장과 관계부서, 지방의원,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민간전문가, 주민 당사자협의체 대표</li> <li>· 지역 현안, 문제 진단, 미래방향, 생활권 설정, 관련 사업 선정 등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협의와 결정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li> </ul>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 내 주민자치회 임원과 행정(읍·면장),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지방의원 등</li> <li>· 주민의견 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 지역사회 공론의 장 개최,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세부내역 사업의 협의와 결정 - 월 1회 이상</li> </ul>
농촌협약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활동가 중심</li> <li>· 농촌협약의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 수행</li> <li>·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행정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자율성 존중</li> </ul>

출처 : 농식품부, 2022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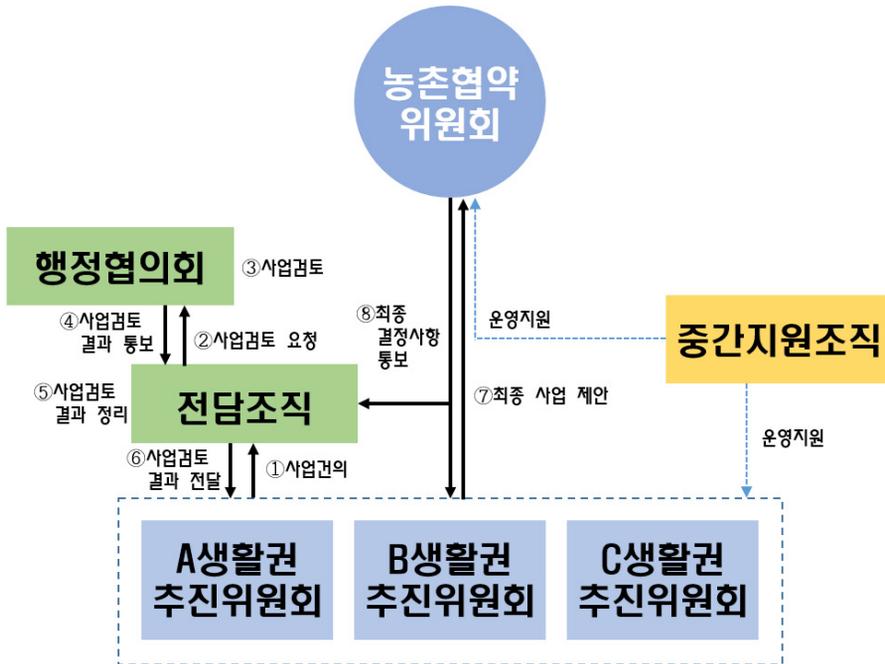


그림 3. 농촌협약제도 추진체계

민관 거버넌스에서 최종 승인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이 추진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협약 선정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협약 평가에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전담조직, 농촌협

약지원센터는 필수사항으로 설정하였으며 생활권 추진 위원회는 가점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즉, 위에서 제시한 필수 주체들을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농촌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주민참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표 7.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시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	이천시	원주시, 영월군	괴산군, 영동군	홍성군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 2. 시군별 농촌협약제도 추진체계 운영결과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농촌협약 추진체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21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의 관련 담당자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표 7). 인터뷰는 농촌협약 담당자를 비롯한 농촌협약지원센터 상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1개월간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시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협약의 진행현황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체계의 운영, 성과관리, 사업운영현황 등이었다. 본 장에서는 인터뷰의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한 '추진체계'의 현황과 운영, 지자체 담당자들의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1) 농촌협약 추진주체의 구성현황

2021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서는 협약 체결 당시의 추진체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주체라 할 수 있는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추후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된 생활권추진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생활권추진단은 농촌협약 자체가 설정한 생활권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제도로 생활권 내에서 의견의 조율, 사업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차년도부터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다.

추진주체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농촌협약위원회는 최초 협약당시의 구성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약이 진행되면서 개인 신상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가 존재하였다. 구성원은 대부분 부시장 및 부군수와 민간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하는 구조였으며 구성원은 시군청의 과장급과 지역 농업·농촌 관련 단체장이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위해 시군의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행정협의회는 시군청 관련 과(課)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주체는 최초 농촌협약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한 형태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협약지원센터의 경우 농촌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는 원칙만 동일하고 시도마다 구성원의 수, 조직의 특성, 근로계약의 형태, 수행하는 역할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농촌협약의 운영을 위한 추진주체는 협약 당시의 가이드라인에 존재하고 있는 추진주체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차후에 필요성에 의해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추진체계는 구축하지 않았다. 농촌협약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민간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운영형태가 시군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2) 농촌협약 추진주체 운영현황

농촌협약제도를 운영하는 시군 인터뷰 결과 농촌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주체의 운영이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추진주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나, 대다수 시군에서는 추진주체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농촌협약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농촌협약위원회는 주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되어 사안을 결정하여야 하나, 대부분 원활히 개최되지 못하였다. 행정협의회는 사업운영 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견 반영과 제도적 검토를 수행해야 했으나 이 역시 원활히 개최한 시군은 소수에 그치고 있었다. 마지막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민간과 관의 가교역할로 정보를 상호 전달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나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시군에서 농촌협약 추진주체를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주체 개최를 위한 이슈의 부족이다. 각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주체의 안이 존재하여야 하나 회의의 중요도나 참석하는 참여자를 고려할 때 이들과 함께 논의하여야 하는 주제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각 추진주체에 참여하는 위원 및 활동가의 농촌협약제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농촌협

약위원회의 경우 농촌협약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 관련 농촌지역개발 전문가는 지역에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민간의 경우 전체적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견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최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전문가나 민간의 주체를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이들에게 수당지급과 함께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 운영경비가 필요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경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 V.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주체 운영방안

농촌지역개발이 내발적 발전론<sup>4)</sup>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함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농촌협약제도는 이와 같은 원칙 속에서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령 상에 제시되고 있는 추진체계가 이미 추진사업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되던 농촌협약제도와 새로운 법령 내의 추진체계 간의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술하였듯이 법령 상의 추진체계가 상위개념,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가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 농촌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추진체계와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체계가 조화되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추진체계와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통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농촌협약제도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주체의 비교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의 통합된 추진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체계와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주체 비교 분석하였다.

행정과 민간이 함께 포함되어 운영하는 조직은 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라 할 수 있다. 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식품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농촌협약위원회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운영된다. 수행하는 역할은 정책 및 계획을 승인하는데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면에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는 기능적으로 중복된 요소가 존재한다. 민간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농촌공간지원기관과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협약위원회와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 해당 부분은 기존에 존재하는 농식품부의 정책지원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정확하였던 광역의 지원기관을 새롭게 설정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협약지원센터와 동일한 역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관은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상에 반영되었으나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법령상 보이지 않는다. 주민조직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주민협의회가 존재하고 농촌협약제도에서는 생활권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둘다 사업의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회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생활권 단위의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생활권추진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 종합하면 기초 차원에서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의 중복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주민조직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표 8).

###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추진주체의 설정 및 운영방안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안을 위하여 추진체계 설정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주민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공모사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가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 이는 사업의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결과물의 유희화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

표 8.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인터뷰 주요 결과

부문	내용
추진주체 구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권추진단(추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을 구성한 시군 없음</li> <li>의회의 협조를 위해 농촌협약위원회에 시·군의원 포함</li> <li>다양한 조직원의 수, 형태, 근로형태의 농촌협약지원센터</li> </ul>
추진주체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주체 활동의 근간이 되는 이슈가 없는 상태로 추진주체 활동이 불필요함</li> <li>추진주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농촌협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 문제 발생</li> <li>지역 내 부족한 지역개발 전문가 현황</li> <li>추진주체 운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의 부족</li> </ul>

표 9. 농촌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제도 추진주체 비교

구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협약제도	비교 결과
관+민간 (거버넌스)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중앙·광역·기초)	농촌협약위원회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의 결정,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계획 승인 역할 수행</li> <li>기초의 심의회와 위원회의 역할 중복 요소 존재</li> </ul>
민간	농촌공간지원기관 (중앙·광역·기초)	농촌협약지원센터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기관은 현재 지원센터의 역할에 추가적인 역할 부여</li> <li>기초의 지원기관과 지원센터는 역할 중복</li> </ul>
관	전담조직	전담부서	중앙·광역·기초에 존재하는 행정조직으로 농촌공간 정책 전담
	-	행정협의회	기초에서만 행정협의회 존재
주민	주민협의회	생활권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협의회는 농촌특화지구만을 위한 조직</li> <li>추진위원회는 생활권 사업과 연계된 조직이나 명확한 역할 설정 미흡</li> </ul>

다. 새로운 신규법령의 도입 시 지역에서 느끼는 혼란은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농촌협약제도와 연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혼란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있어 중복성을 제거하고 편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추진체계는 결국 지역의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운영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의 추진체계에 새로운 추진체계를 연계 되는 '옥상옥'의 구조를 제거해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별 Action Group(활동 단체 또는 행위 주체)을 추가하였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협약의 추진체계구조는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주체만이 설정되어 있어 타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이 없다.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주민 Action Group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조직을 참여시키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주민협의회와 사업별 Action Group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체계에 참여하는 안을 제안한다. 또

한, 생활권 계획이 아닌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법의 성격을 고려하여 생활권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농촌협약제도의 사업 형태를 고려할 때, 패키지 지원에 효과적이며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농촌협약위원회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농촌협약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역할을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의 운영은 결국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운영에 있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대체를 제안한다. 전술한 농촌협약위원회의 폐지와 동일한 사유로 기존의 농촌협약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의 역할 강화이다. 현재 법령상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은 한정적으로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구체

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초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닌 지원 및 협조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광역지자체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지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계획을 광역적인 관점에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광역단위에서 현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만 참여하지 않고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도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4와 같이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서 시·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운영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때,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의 지원 및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법령에서 제시하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에서는 지원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즉, 시·도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기초와 광역이 함께 대응해 나가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 VI. 결론

본 연구는 2023년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 중이던 농촌협약제도와 추진체계를 비교하여 새로운 추진체계 안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체계와 농촌협약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종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농촌지역개발 관련 선형연구에서는 공동체와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강조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행정과 함께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도 이와 같은 중요성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사업의 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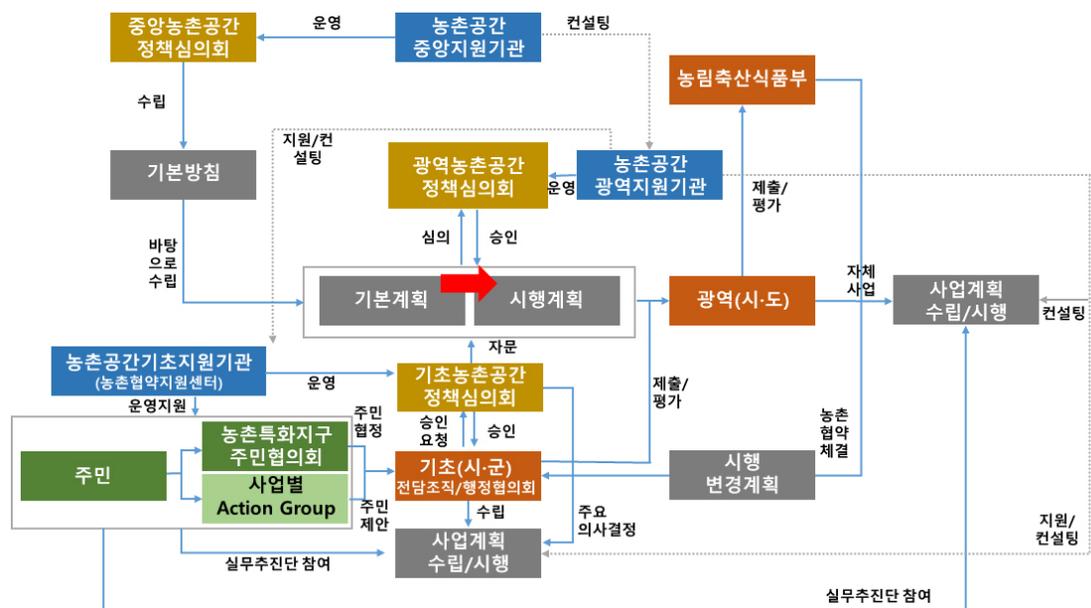


그림 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농촌협약제도 추진체계 활용 추진체계(안)

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는 현장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목적인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협약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농촌협약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추진체계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한 추진주체 중에 농촌협약제도와 중복되거나 역할이 불분명한 주체가 존재하여 사업추진 시 법령과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협약 추진주체의 문제점도 도출하였다. 이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다음의 추진체계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농촌협약제도에서 중복되는 주체를 법령에서 제시하는 주체로 대체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주민참여와 더불어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이다.

본 연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사업 진행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이미 추진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된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발의 주체가 되어 본 추진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농촌지역개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추진체계라는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민과 관의 역할과 함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 역시 중요하게 작용된다. 이에 성공적인 농촌공간계획법의 정착 및 농촌지역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본 연구를 통해 알아낸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시군별 상이한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현장의 문제해결’

을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소멸위기와 같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 註

- 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를 기록하였음(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 2) 365생활권은 농촌지역에서 30분 안에 보육 및 보건서비스 접근, 60분 안에 문화·여가서비스 접근,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함.
- 3) 관이 설립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형태는 관에서 설립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관설관영이 있음.
- 4)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단체가 개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resource)과 능력(capacity) 및 기회(opportunity)를 주도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생산적 활동을 창출하고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창출하는 과정(process)을 말함(정기환 등, 2005).

## 참고문헌

- 고경호, 2021, “농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 및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 지역 내 민간위탁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을 사례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9(1), 51-73.
- 고진영·김명일·양민호·김지용·김기성, 2017, “농촌주민의 역량이 농촌개발의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공학회지, 60(1), 37-45.
- 구자인, 202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현재와 미래,” 제5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발표자료.
- 김강섭·이상정, 2004,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 6(18), 25-38.
- 김기태, 2019,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네트워크, 76, 157-171.
- 김두순·권지윤·배성의, 2020,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한국자치행

- 정학보, 34(1), 91-120.
- 김병환·정규호·염태영·민현정·김규환·홍성운·윤세홍·김수진,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환경부.
- 김상범·엄성준·안필균·정명철·도지윤·송미정, 2022, “경상지역 농촌협약 특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층구조, 생활권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4(4), 67-75.
- 김정섭·마상진·권인혜,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강화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촌공간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마상진·권인혜, 2014,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덕병·임광명·안재문, 2018, “농촌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25(3), 135-148.
- 사득환·최일문, 2023,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성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301-325.
-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의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 성주인·심재현·한이철, 202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KREI농정포커스, 1-18.
- 성중탁, 2023, “우리나라 농·어촌 정비 및 재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농어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81, 27-58.
- 성창훈, 2022,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라경제, 382, 60-61.
- 송미령·박주영, 200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학열·조소진, 2023, 「충남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 충남: 충남연구원.
- 윤정미, 2024, “지방소멸지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마을소멸지수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 농촌계획, 30(1), 1-33.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3-17.
- 이성재·장성화·한국환, 2022, 「지치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안 연구」, 전북: 전북연구원.
- 이영아, 2021, “현장 중심적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경북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2), 230-246.
- 임광명, 2017,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유형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4(4), 237-248.
- 정기석, 2017, “마을만들기 방법론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방안 -농촌공동체 재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개발·활용 전략 중심-,” 한국농촌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57-77.
- 정기환·송미령·김태근, 2005,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선화, 2024, 지방소멸 위기 대응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스웨덴 농촌지역개발정책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11(1), 43-65.
- 조소진·정환영, 2017, “역량강화 중심의 마을만들기 참여에 따른 주민인식변화 분석: 충청남도 공주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89-105.
- 조영재·윤정미·한승석·조승현, 2023, “정주계층별 농촌 생활서비스 기능정립 및 취약지역 기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29(4), 13-26.
- 최영완·엄민호·김영주, 2022,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 -김해시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8(4), 55-67.
- 최영출, 2002, “거버넌스 이론과 지역발전전략” 국토, 6-19
- 최정신·최윤지·정진이·김현영, 2022, “여성농업인의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9(1), 19-31.
- 최창석·안국찬·이정우, 2021, “지방농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연구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5(3), 177-200.
- 평택시, 2019, 「평택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개발거버넌스 구축 연구」, 경기: 평택시청
- 한승석·정환영, 2022, “농촌 낙후마을 지수 개발 방법론: 충청남도 농촌 마을을 사례지역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3), 268-284.
- 홍성균, 2020, 「농촌공간전략계획」, 충남: 홍성군청.
- Chavis, D.M.M. and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 Psychology*, 18(1), 55-81.

Goodwin, M. and Painter, J., 1996, Local governance, the crises of fordism and the changing geographies of regula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phers*, 21(4), 635-648.

Lasker, R.D., Weiss, E.S., and Miller, R. 2001, Partnership synergy: A practical framework for study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advantage. *The Milbank Quarterly*, 79(2), 179-205.

Rhodes, R,A,W.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652-667.

Ward, N. and McNicholas, K., 1998, Reconfiguring rural development in the UK: Objective 5b and the new rural covernance, *Journal of Rural Studies*, 14(1), 27-39.

Zhao, L., Lu, Y., Wang, B., Patric Y.K. and Zhang, L., 2012, Cultivating the sense of beloning and motivating user participation in virtual communities: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2(6), 574-58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년 2월 27일자, “농촌공간 계획 제도화의 첫걸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 제정”,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5904&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교신 : 한승석,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이메일 : ssh@cri.re.kr)

Correspondence: Seung-Seok Han, 28517, 102-1, Dae-seong-ro,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Dept. of Regional and Urban Planning Research, Chungbuk Research Institute (Email: ssh@cri.re.kr)

투고접수일: 2024년 8월 26일

심사완료일: 2024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